부 록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 ①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심의준비절차는 주장,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심사관과 피심인은 심의준비절차에서 심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심의준비절차의 진행)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관리관의 보좌를 받아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제1항에 의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본 14부(소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8부) 및 전자기록(주장을 기재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제2항의 서면, 증거의 부본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견서에는 주장의 요약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준비기일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판관리관은 심의준비기일의 진행결과를 정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준비기일은 공개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6(심의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신청 등)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지체없이 각 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회의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참고인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의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의 위촉, 문서의 송부촉탁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

장의 의무)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에서 당해 안건의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쟁점을 정리하여 사건을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심의준비절차를 개시한 뒤 3월이 지난 때
2.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한 때
3.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더 이상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②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하기에 앞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요약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9(심의준비절차를 마친 후의 심의) ① 심판관리관은 심의준비절차종료후 첫 심의기일에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의무)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② 심사관과 피심인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한다.

③ 각 회의는 심의준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 첫 심의기일에서 바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기일간 심의준비절차) 각 회의의 의장은 심의기일에 들어 간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의11(심의준비절차의 재개) 각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준비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31조(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에 따라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 · 의결사항) 제3항 및 제30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등)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부 록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권리 · 의무의 양도 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설정,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계약이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가.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 4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공사기간(월수)}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2.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채권(국채 또는 지방채)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③ 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④ 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않은 경우, 을은 제2항각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납부 또는 보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중 미지급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갑은 제2항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납부 또는 보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 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이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⑧ 갑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감독자) ①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 을이 갑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 을은 감독자의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시공관리책임자) ① 을은 시공관리책임자를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을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한 전기공사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을은 그의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시공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을이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을은 공사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서면 승낙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을은 갑 또는 감독자가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 위탁과 관련된 기계 · 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 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⑦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

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 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사의 변경 · 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체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④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⑤ 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⑥ 갑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이전에 추가공사의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에 긴급이 요구되거나, 사전에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시공 중 또는 시공 후 결정한다.

제15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은 계약체결이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③ 갑과 을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 갑 또는 감독자는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검사의 기준 ·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양자가 협의하여 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18조(위험의 부담) ① 공사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인수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목적물 검사기간중 갑 ·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 ·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갑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

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교부한다.

③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④ 갑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20조의2(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1. 전기공사 위탁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목적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갑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갑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5.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20조의3(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갑이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발주자에게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파산 · 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등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 갑 및 을이 합의한 경우
3. 갑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갑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2조(선급금의 지급)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④ 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⑤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당해기성금 ÷ 총계약금액)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계약서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상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기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 · 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제1항에 의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7.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의 경우에는 을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2.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3. 제12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4.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2(공사의 중지)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6조(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7조(보험가입 등)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포함한다.) 등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 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① 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업소유권) ①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등(이하 "공업소유권"이라 한다)을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을은 목적물에 대해 공업소유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 중 책임이 있는 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공업소유권의 취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의 조정)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하도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부 록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광고업종의 용역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하고,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용역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용역(하도급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이에는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 포함된다)의 위탁일,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납품 · 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기타 용역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갑 또는 을이 필요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지기로 한다.

제2장 용역위탁 및 하도급대금 결정 등

제6조(용역위탁)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제3조 규정된 개별계약의 내용을 정한 후,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
①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대금은 갑과 을이 목적물 등의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에 광고주의 요청, 제작일정 변경 또는 기타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물품 등의 공급)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선급금의 지급)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납품, 수령 및 검사 등

제11조(납품시기 및 장소)
납품시기는 갑이 을에게 용역위탁한 목적물 등을 을로부터 납품받기로 정한 날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갑이 목적물 등을 을로부터 납품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하며, 납품시기 및 장소는 개별계약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납품)
① 을은 목적물 등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납품절차에 따라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납품 등을 지연하게 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 · 변경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단의 규정은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4조(목적물 등의 수령 및 검사 등)
① 갑은,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장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6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방법)

①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이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말하고, 납품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경우로서 갑이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갑이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하도급대금의 상계)

갑은 을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유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을이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5장 보 증

제19조(품질보증)

을은 목적물 등에 대하여 개발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 등이 개별계약에 정해진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

① 을의 용역수행에 대한 검사 완료 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전 승낙에 의하여 보증서 및 증권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일반사항

제21조(보고의무)

을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갑에게 용역수행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갑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하도급)

을은 갑이 의뢰한 용역위탁의 전부를 타업체에 재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그 일부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하여 재하도급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영업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경영간섭의 금지)

갑은 을에게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리 ·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취소 ·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제외), 회생절차개시 · 파산 및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31조(소송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2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① (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용역하도급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월 일

갑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을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부 록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현행 신고요령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3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 …… …… …… ……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등 …… …….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영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 경우 나목의 서류는 지주회사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나목·라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정관 〈신 설〉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신고)** …… …… …… …… ……. 1.~3. (현행과 같음) 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제2조제1의4 …… …… …… ……나목·다목 …… ……다목·마목 …… ……. 가. 정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현행 신고요령	개 정 안
나.~라.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제7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를 하는 회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단, 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영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의 서류는 지주회사의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나목·라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정관 〈신 설〉 나.~라. (생 략)	**제7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조제1의4…… … … ……나목·다목…… ……다목·마목…… ……. 가. 정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제8조(기타 자산의 증감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를 하는 회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영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에 관하여는	**제8조(기타 자산의 증감 등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 …… 제3호 및 제4호 …… …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조제1의4 …… … …

현행 신고요령	개 정 안
제7조(합병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제7조(합병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제3호 나목의 서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라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나목 · 다목 …… …… 마목 …… 받은 것이어야 ……
제11조(적용제외) 본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소유주식의 감소, 기타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2조의2(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 등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적용제외)** …… …… …… 제2조 … …… …… 지주회사 등 …… …… 지주회사 등 …… ……
제12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 제11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 제3호의 서류는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정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4. (생 략) ②(생 략)	**제12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 …… …… …… 제13호 …… …… …… …… …… …… …… 1.~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4조(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14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 …… 지주회사 등의 …… …… …… …… …… 1. ……

현행 신고요령	개 정 안
가. · 나. (생 략) 다.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15조(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제무제표를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2항 ……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신 설〉 〈신 설〉 나.~바. (생 략)	2. …… 이 경우 가목의 서류는 신규 자회사 및 정관이 변경된 자회사에 한한다. 가. 정관 나. (현행 가목과 같음)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현행 마목과 같음)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영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신 설〉 가. 정관 〈신 설〉 나.~바. (생 략)	3. …… 법 제2조제1의4 …… …… …… …… 이 경우 가목의 서류는 신규 사업관련손자회사 및 정관이 변경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한한다. 가. 정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현행 마목과 같음)